

2026. 2. 25.(수) 10:30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회의자료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목 차

☐ I. 정책건의의 추진사항

- 1. 건의사항 처리결과 5

☐ Ⅱ. 시·군 건의사항 35

- 1.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지역 대표행사 관련시책 지원 : 보령시 ... 35
- 2.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재검토 건의 : 공주시 37
- 3.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범위 확대 건의 : 아산시 39
- 4. 기온~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원 건의 : 서산시 41
- 5. 도로 긴급 통행제한 시 도로관리자 신호 또는 지시 권한 부여 : 논산시 ... 43
- 6. 육·해·공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계룡시 45
- 7. 경로당 주5일 급식 정책 국비 지원 건의 : 당진시 46
- 8. 원활한 마을 이장 선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금산군 .. 47
- 9.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사업 예산증액 요청: 금산군 ... 48
- 10.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건의 : 부여군 ... 49
- 11.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요청 : 서천군 52
- 12. 시설 블루베리 및 쪽파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건의 : 서천군 ... 53
- 13. 농촌 빈집정보 수집·위탁관리·표준계약 제도 정비 : 청양군 ... 54
- 14. 농업진흥지역(구역) 내 농촌생활 거점시설 설치 규제 완화 : 청양군 ... 56
- 1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국·도비 지원 건의 : 예산군 58

목 차

▣	Ⅲ. 협의회 심의·논의사항	61
●	1.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61
●	2. 민선8기 4차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7
●	1. 민선8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백서 발간 추진상황	68
●	2. 차기 회의 개최 안내	70
▣	Ⅳ. 홍보·협조사항	75
●	1. 2026년 공주인절미 축제 확대 변경 개최 : 공주시	75
●	2. 2026 논산딸기축제 개최 : 논산시	76
●	3. 제36회 한산모시문화제 개최 : 서천군	77
●	4.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 청양군	78
●	5. 새로운 문화관광의 거점 '면암 최익현 기념관' : 청양군	79
●	6.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 태안군	81
●	7. 태안해양치유센터 정식 개관에 따른 운영 안내 : 태안군	82
▣	Ⅴ. 참고자료	87
●	1.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87

I. 정책건의의 추진사항

1. 건의사항 처리결과	5
--------------------	---

건의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의 명	처리 상황
계			55건 / 처리 19건, 검토중: 36건 (수용 3건, 장기검토 9건, 수용곤란 7건)	
충청남도			2건 / 처리: 2건(장기검토 2건) 검토중: 0건	
충청남도 (세정과)	25.11.	보령	항만세원 확보 위한 벌크화물세 도입 건의	장기검토 (결과①)
충청남도 (하천과)	25.11.	공주	지방하천 정비사업 완료 구간 내 사유지 보상	장기검토 (결과②)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3건 / 처리: 17건 검토중: 36건 (처리: 수용 3건, 장기검토 7건, 수용곤란 7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23.04.	아산	법정부 차원의 공무직 복무 관련 상위법령 마련	검토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3.06.	홍성	면(面) 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 완화	검토중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23.08.	보령	마리나항만법 규제 완화로 해양 新산업 육성	검토중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23.11.	논산	충남권역 국립보훈 요양시설 건립을 통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검토중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	23.11.	예산	국립 공주대학교 의대 신설 건의	검토중
국토교통부	24.03.	태안	국도38호[이원~대산]해상교량 건설 지원	검토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4.05.	공주	75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지원	검토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24.05.	논산	청년창업농의 농지은행 임대차계약과 시설설치 승인 절차 일원화	검토중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4.05.	부여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민청 신설 및 이민법 제정 건의	검토중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황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24.05.	홍성	신창역~홍성역간 수도권 전철 연장운영 건의	검토중
국토교통부	24.05.	태안	「태안~서산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건설 계획 반영	검토중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4.07.	예산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 기준 세분화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24.07.	논산	배수개선사업 대상 기준 완화 건의	검토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25.03.	보령	신규 국고여객선 건조에 따른 외연도항 내 전용 접안시설 구축	검토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5.03.	당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 기준인력 등 분리	검토중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25.03.	서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감방안 건의	검토중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25.08.	보령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기시행 (결과③)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25.08.	보령	정부차원의 반값농자재 지원 정책도입	수용근관 (결과④)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개인정보위원회	25.08.	공주	드론 비행승안개인정보 촬영신고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장기검토 (결과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25.08.	아산	주유소 지역화폐 매출액 30억 이상 사용 제한 제외	수용근관 (결과⑥)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25.08.	논산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	수용근관 (결과⑦)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25.08.	계룡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요청	장기검토 (결과⑧)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5.08.	당진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접근제약 완화	검토중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황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과)	25.08.	금산	지방인구 소멸에 따른 귀농인 유치지원 확대	장기검토 (결과⑨)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5.08.	금산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완화로 기업 애로해소	수용근란 (결과⑩)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25.08.	부여	지방교부세 감액 금지 및 최저조정을 도입	장기검토 (결과⑪)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금융지원과)	25.08.	부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수용근란 (결과⑫)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25.08.	서천	김 가공 정수시설 물 공급망 구축	장기검토 (결과⑬)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25.08.	서천	마른 김 가공 배출수 관련 환경규제 완화 건의	수용근란 (결과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5.08.	청양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장기검토 (결과⑮)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25.08.	홍성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하이패스 나들목 정의 개정	수용근란 (결과⑯)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25.08.	예산	시·도 및 시·군·구 선거법 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시행 (결과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5.08.	예산	기준인건비 초과지출가능항목 확대 운영 건의	수용 (결과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25.08.	태안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체사업(해상풍력) 지원	장기검토 (결과⑲)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25.09.	공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불용액 집행제한 완화	검토중
환경부 (하천계획과)	25.09.	아산	하천 준설 의무화 및 하상변동 특별조사 건의	검토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25.09.	서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업종 조정 검토	검토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5.09.	계룡	공무원 기준인건비 증액[정원 증원] 건의	검토중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황
환경부 (수도기획과)	25.09.	금산	수도시설관리자 임명요건 완화	검토중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25.09.	금산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유휴 국유재산 활용	검토중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25.09.	부여	정보공개 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건의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25.09.	부여	귀농후계농 정책자금 선정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해소 건의	검토중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5.09.	청양	외국인자녀 다문화가족 범위 포함	검토중
산림청 (산지정책과)	25.09.	홍성	산지전용허가 권한 지방이양	검토중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25.11.	아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지자체 재량권 확대	검토중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25.11.	아산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사용기간 연장	검토중
국방부 (시설기획과)	25.11.	논산	지자체의 국방연구·시험 인프라 조성 기반 마련	검토중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협력과)	25.11.	계룡	국유지내 체육시설 운영시 사용료 감면 관련법 정비	검토중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25.11.	당진	공무원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제한 완화	검토중
산림청 (산림자원과)	25.11.	서천	수종전환 벌채에 따른 조림사업비 증액 건의	검토중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25.11.	청양	어르신 친화적 공문으로의 행정 혁신	검토중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25.11.	홍성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권한 위임 범위 확대	검토중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25.11.	태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확대 건의	검토중

①	별크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건의		
검토기관	道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 김재곤 (전화 : 041-635-3640)	검토결과	장기검토 (2025. 11.)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보령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 개요

- 항만 운영은 국가가 담당하나, 항만 소재 지방정부가 대기오염, 기반시설 파손, 환경개선 등 재정수요 부담
 - 국가와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및 세원 확보 방안이 부재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불균형 심화
 - 별크화물(석탄, 철광석, 유류, 곡물 등)은 컨테이너와 달리 전혀 과세되지 않아 세제상 형평성 문제 발생

□ 검토 결과

- 별크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세제의 신설·변경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道에서 직접 도입은 불가
- 별크화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행안부, 해수부) 건의 추진

□ 향후 계획

-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제도개선(안) 제출 추진(3월)

②	지방하천 정비사업 완료구간 내 사유지 보상		
검토기관	道 하천과 하천행정팀 주무관 박경수 (전화 : 041-635-4531)	검토결과	장기검토 (2025. 11.)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공주시)	협조부서(부처)	-

-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일원
- ◆ 사유지현황 : 60필지/ 3.5만㎡
- ◆ 보상비(추정) : 2,500백만원
- ◆ 내 용 : 정비사업 완료구간 중 누락된 사유지 보상 요청

□ 건의 개요

-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공사 구간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에서 누락된 사유지 보상 요청 및 보상 근거 마련
- 공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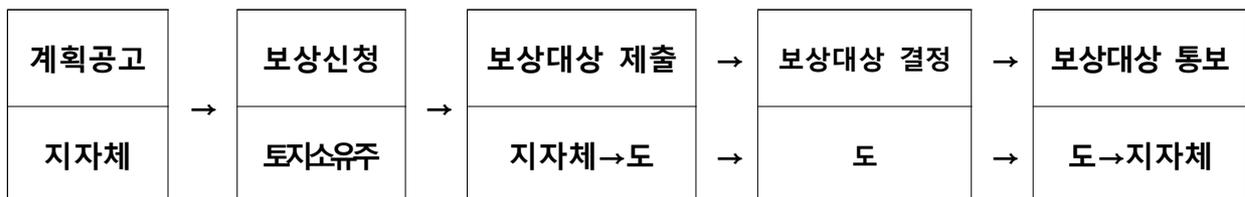
사업명	기 간	금 액	위 치	사업량	비 고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9.~22.5.	242억	정안면 장원리 의당면~청룡리	하천정비 9.5km	

□ 검토 결과

(조례상 보상대상)

-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 되지 않은 토지

※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



※ 미지급 용지 보상대상 결정은 과거 공사이력(보상대장)을 기준·결정

(검토내용)

- 해당 구간은 정안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2015~2022, 9.5km)으로 정비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MP) 상 사업의 시종점 구간 기준으로 총 13km가 계획 되어있었으나,
- 무제부 구간* 및 예산 여건 등 실제 공사가 필요한 구간만 정비를 시행함에 따라 해당 사유지가 사업구간(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 무제부 구간 : 제방설치 계획이 없거나, 제방이 없는 자연 상태의 구간

(검토결과)

- 「하천법」 제79조에 따라 지방하천은 하천구역내 사유지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충남형 미지급 용지 보상대상 검토 결과
 - 과거 공사(보상)이력 부존재하여 보상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불가

□ 향후 계획

-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 상기 건의사항과 같이 하천공사가 완료된 구간(시·종점기준)내 위치하고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상근거(보상대상 확대 등) 마련
 - 도내 지방하천 하천구역 내 사유지 현황

(단위 : 천㎡, 천원)

구 분	조사 대상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 토지			보상 비대상 토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추정금액	필지	면적	추정금액
합 계	44,493	22,280	617	317	15,491,244	43,876	21,963	1,073,293,980

③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검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 주무관 박태현 (전화 : 044-203-5158)	검토결과	기시행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보령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탈석탄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폐지
 - ‘36년까지 노후석탄화력 28기 폐지(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충남도) 보령화력 #5,6, 태안화력 #1~6, 당진화력 #1~6 [계: 12기]

- 폐지지역 지역경제 침체, 지역산업 붕괴 위기 직면 중이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체계 및 대책 방안 미비

⇒ 국회 계류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신속 제정 건의

* 정의로운 전환특구, 기금지원, 지역·고용·기업부문 직접적·체계적 지원방안

□ 검토의견 : 기시행

- 현재 국회에서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지역 영향 최소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16개 안 발의)

- 현재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중으로 합리적인 안이 제정되도록 기후부는 특별법의 ‘26년 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음

*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24.12~, 정부·지자체·발전5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25.8~12, 정부·민노총 등),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25.8~’26.2, 정부·한노총 등)

④	정부차원의 반값농자재 지원 정책 도입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박재영 (전화 : 044-201-1892)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보령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매년 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가의 농업경쟁력 약화 되어 지원이 부족한 소농들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정책 도입 필요
- 농가 소득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일관적이고 규모 있는 반값농자재 지원정책 도입(국·도비 반영)

□ 검토의견 : 수용근란

- 농자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구입 보조는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 국내 보조금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추진 곤란
 - * 농약·비료 등 농자재에 대한 지원은 농산물 생산 왜곡 효과 유발 등으로 감축 보조에 해당
 - 정부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 원료에 할당 관세 적용, 비료 원료 구입자금 지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추진 중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일부(80%) 지원 중

⑤	드론 비행승인·개인정보 촬영신고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무관 백병성 (전화 : 044-201-4315)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공주시)	협조부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건의개요

○ 절차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개선

- 드론 활용시 필요한 비행승인·촬영허가(국토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촬영신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행정 절차가 이원화되어 비효율 초래

*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국토부) : 비행승인·촬영허가 등 3~7일

** 개인정보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촬영신고 2~3일 소요

- 드론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내 개인정보 촬영 신고 기능을 통합하여 자동처리체계를 구축, 신청자는 1회 신청으로 모든 승인·신고 완료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 구축·운영 중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양 시스템간 연계 방식·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여 지자체 등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음

* 원스톱민원시스템과 연계 허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판단은 필요

⑥	주유소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액 30억 이상 사용 제한 제외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주무관 조유진 (전화 : 044-205-3923)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아산시)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민 가계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 생계 안정, 물류비 절감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정책 실현을 위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연 매출액 30억원) 주유소 예외 적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 기준(연 매출액 30억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 소비 진작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취지이고
 - 특정 업종에 대해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⑦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		
검토기관	경찰청 경비과 경감 한국인 (전화 : 02-3150-1169)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논산시)	협조부서(부처)	-

〈 야간·심야 활성화 등 소음기준 강화 및 시간대 확대 〉

□ 건의개요

- 야간·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5~10dB 하향 조정
- 유아동 수면시간 등 고려하여 심야시간을 00~08시^{기준 07시}로 확대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04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활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래 「집시법 시행령」을 수 차례 개정, 지역·시간대별 허용되는 소음 한도를 계속 낮춰 소음관리 강화
 - ※ 지난 '24.8월 「집시법 시행령」 개정시 모든 지역·시간대 소음기준을 5~10dB씩 하향
- 특히, 평온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소음 허용치를 낮게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구분	대상 지역	주 간 (07:00~해지기 전)	야 간 (해진 후~24:00)	심 야 (00:00~07:00)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dB 이하	50dB 이하	45dB 이하
	공공도서관	60dB 이하	55dB 이하	
	그 밖의 지역	70dB 이하	60dB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dB 이하	70dB 이하	65dB 이하
	공공도서관	80dB 이하	75dB 이하	
	그 밖의 지역		90dB 이하	

- 다만, △소음기준 추가 하향 △심야시간 범위 확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국민의 평온한 일상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지속 노력하겠음

< ‘소음원 기준’ 측정방식 도입 >

□ 건의개요

- 「집시법 시행령」 [별표 2]에 소음 측정방식^{장소}을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기준’에서 ‘소리 증폭기 위치(소음원) 기준’으로 변경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모여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집회·시위 특성상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 (대법원 2004도4467 판결)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

- 이에 따라 「집시법」(제14조 확정기등 사용의 제한)도 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제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

- 또한, 소리는 음원과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주변 건물 등 장애물이나 반사음의 영향을 받으면 세기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음원 기준’ 측정방식은 피해자가 위치한 장소에 실제로 전달되는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기 어려움을 고려하면 건의안은 수용이 곤란함

※ 소음측정 방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도 같은 취지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을 측정점으로 삼고있음

⑧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요청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사무관 최현숙 (전화 : 044-200-3733)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협조부서(부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건의개요

-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전액 국비로 운영되어 오다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부터 이를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
 - 전액 국비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보건소 등」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 2022년부터 시비로 부담
 - 2025년까지 군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점차 증액
 - ※ 봉급(병장 기준) : 22년 67.6만원 → 23년 100만원 → 24년 125만원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국방은 국가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사무임
- 병역의 의무인 사회복지복무요원 사업은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이양함
 -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강력 요구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전환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운영하는 사업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인건비 사업(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전환사업은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이양된

사업으로 이양 결정 당시의 국비분을 보전(~'26년)하고 있으며 보전종료
기간 이후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 : '18년 11% → '20년 21% → '22년 23.7% → '23년 25.3%(14.3%p 증가)

- 전환사업 선정은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합의로 결정되어 관계법령* 개정이 수반되었음

* 「지방세법」, 「지방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등

- 해당사업의 이양 철회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⑨	지방인구 소멸에 따른 귀농인 유치지원 확대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 홍석구 (전화 : 044-201-1539)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금산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농식품부에서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 정책자금 전국 지원 총액이 '22년 3,000억원에서 '25년 1,500억원으로 축소됨.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감소하였고, 스마트팜 시설 및 농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어려워짐.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금리 및 대출한도 개정 필요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 2.0% ○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 1.5% ○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5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1억원 한도 이내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전체 용자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개인별 지원한도 확대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당국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 및 승인이 있어야 추진가능.

⑩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완화로 기업애로 해소		
검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황현민 (전화 : 044-201-7079)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금산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토지이용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은 **제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1)
- 제조업의 특성상 특정 시기(명절, 가정의 달 등)에는 생산량과 함께 폐수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고정 기준(최대 배출량 50m³)이 적용되어 유연한 운영이 불가하고, 제5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기준(50m³ 미만)이 낮아 기업 운영 애로
 ⇒ 생산량이 증가하는 특정 시기 동안에 폐수배출시설 허가부서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1일 폐수배출량 기준을 완화(50m³→100m³)할 필요

□ 검토의견 : 불수용

-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산업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의 규모(1종 ~ 5종 사업장)를 달리 정하고, 해당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를 하고 있음
- 건의 내용인 용도지역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의 입지 제한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입지 규제 사항은 해당 법률 검토를 통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3]에서는 폐수 배출량 산정* 시 생산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고 있는바, 공정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⑪	지방교부세 감액 금지 및 최저조정을 도입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사무관 권순현 (전화 : 044-205-3754)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부여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 개요

- 연도 내 교부세 감액 및 미교부 금지
 - 다만, 국가재정위기 등 예외적 상황 시 국회 동의 하에 가능
- 최저조정을 제도 도입
 - 조정을 하락 시에도 자치단체의 최소 재정운용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 마련

□ 검토의견 : 수용근란

< 해당 연도 교부세 감액 금지 >

-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절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①세입경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②예산 집행 보류(불용), ③정상집행 후 차차연도까지 정산하는 방식으로 가능
- 당해연도 감액 조절되지 않는 경우 차차연도 예산에 전부 계상되며,
 - 이 경우, 오히려 차차연도에 급격한 재정충격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악영향이 가중될 우려

< 최저조정을 도입 >

- 자치단체 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 총액의 조정은 매년 변동되며,
 -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현실적인 수요 반영 및 세입 여력 등에 따라 자치단체 부족 경비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변성 존재
 - ※ 수요 증가(복지수요 증가 등) 및 수입 증감(경제 상황 등에 따른 지방세수 증감)에 따라 재정부족액 증감 발생 → 보통교부세 조정률 변동
-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고정된다면 매년 당초 국가 예산에 대해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영 곤란

⑫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과 사무관 이상진 (전화 : 044-201-1744)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부여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재생에너지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 필요
 - 재생에너지 설치 시 최소 분할면적 완화 및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농지를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제한함
- 「농지법」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기존 건축물,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로 구분함
 - (기존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지붕이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 가능(「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
 - (농지전용)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설치 가능(「농지법」 제32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ha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ha 이하로 설치 허용(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면적 제한 없음)
- 이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음

⑬	김 가공 정수시설 물 공급망 구축		
검토기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주정미 (전화 : 044-200-5485)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천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충남 마서·비인·조천면 지역 김 가공시설(33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 세척수는 1일 약 3만4천톤로 다량 사용되고 있어 인근 지하수, 수원지 등의 고갈 우려 등 지역주민들과 분쟁 발생
 - 마른 김 가공시설 물 사용으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해 금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구축 필요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동 사업은 다량의 물 사용이 필요한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1단계 금강 ↔ 정수시설, 2단계 정수시설 ↔ 마서·비인·조천면을 잇는 약 17.9km의 관로 건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사업비 투입 대비 성과 분석, 사업 구체성 등 추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⑭	마른 김 가공 배출수 관련 환경규제 완화 건의		
검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 황현민 (전화 : 044-201-7079)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천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마른 김 가공은 세척 공정에서 절단·건조 등 별다른 외부 인자 없이 순수 바닷물과 용수(지하수, 상수도 등)를 사용하는 단순 가공임에도 일반적인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배출 기준을 일괄 적용

※ 서천군 김 가공업체 57개소(어장면적 3,331ha, 마른김 생산량 12,458천속)

- 김 가공 세척수는 약품 등 첨가물이 일절 없고 오염도가 낮고, 겨울철 김 가공 세척수 배출은 해역 영양염류 부족으로 인한 김 황백화 현상을 저감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성이 있음

⇒ 마른 김 생산과정 배출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김가공 배출수에 대한 별도의 폐수처리 기준 마련(기준 재검토)을 건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일반적인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나,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수산물을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만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2. 4) 도축, 육류·수산물가공 및 저장 시설 단,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 작업시설, 기타수질오염원은 제외

- 이는 지역 어민 등 수산물의 단순 물세척만 진행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지 않은 영세사업장들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으로 단순 물 세척 외에 타 공정이 포함된 김 가공 공장은 기타수질오염원이 아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발생하는 폐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원료투입부터 제품생산까지 폐수를 배출하는 일련의 생산공정) 시설

⑮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 박수진 (전화 : 044-205-3507)	검토결과	증장기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청양군)	협조부서(부처)	기획재정부

□ 건의개요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기존 10만원 → 20만원)

□ 검토의견 : 증장기검토

- 우리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
- 「2025 세제개편안」에 따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6.5%→44%로 확대 적용 예정
- 전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므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동안 매년 전체 기부의 95% 이상이 전액 세액공제 범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

⑬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하이패스 나들목 정의 개정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이왕근 (전화 : 044-201-3883)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홍성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일반 정규IC에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축훈용)와 하이패스IC는 단지 축중기 설치여부 차이만 있을 뿐, 무인 운영방식 등은 유사하나,
- 일반 정규IC 하이패스 차로와 달리, 하이패스IC의 경우에만 지침* 상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

*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IC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및 축중차로(축중기) 설치 의무화 건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하이패스IC는 간결한 구조, 무인 운영 등 소규모로 설치하여 4.5톤 미만 차량의 접근성 개선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
- 4.5톤 이상 화물차는 고속국도 진입 시 적재량 측정을 거쳐야 하므로, 검문소 운영 및 단속인력 편성, 대기장소 설치 등 필요

* 일반 정규IC의 하이패스 차로(축훈용)는 단속인력 배치 및 상시 근무중 도로법 제77조·제80조에 따라 운행제한단속원 배치·상시 근무 필요

- 하이패스IC에서 축중 계측 시, 교통흐름 저하* 및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회차시설·차로수 등 시설규모 확대가 불가피함

* 적재량 측정 시, 통행속도는 10km/h 이하로 제한되어 정체 발생 예상

⇒ 일반 정규IC와의 차별성 상실, 하이패스IC 도입 취지 퇴색

-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국도 IC 통행이 필요한 경우, 요구자(지자체 등)가 일반 정규IC로 사업을 계획하여 설치 요청하여야 함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차량의 회차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도로법 시행규칙

□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제16조(단속반)

- ④ 고정검문소를 상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대 근무할 수 있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반의 책임자를 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17조(고정검문소의 운영)

- ② 고정검문소는 소장이 선정한 단속지점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상시 검사·단속하며,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저속측중기, 계중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③ 고정검문소는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차량의 통행량, 통행 시간 등의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시간, 검문차로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고정검문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검문소의 보안을 위해 최소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고정검문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2. 고정검문소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 “고정검문소”란 계중기, 저속측중기 등을 측정차로에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상시 검사·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제2조(정의)

- ③ “하이패스 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중 승용차, 버스, 4.5톤 미만 화물차만 이용이 가능하며, 고속국도 상의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IC를 말한다.

⑰	시·도 및 시·군·구 선거법 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검토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전화 : 02-3294-8441)	검토결과	기시행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예산군)	협조부서(부처)	-

□ 건의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시기마다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질의
- 법령 해석의 통일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질의·회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건의

□ 검토의견 : 기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규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면·인터넷 질의회답·판례·선거법 알리미 등을 게시하여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질의회답·판례·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공직선거법규운용자료」, 「공직선거법 해설서」 등 각종 자료를 발간·게시·배부하고 있으며,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묻는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홍보물 발행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등을 수록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를 별도로 발간·게시·배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정치관계법은 그 구성과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이 까다롭고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일견 유사해 보이는 사례라도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법 제254조)와 관련하여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주체·목적·시기·장소·방법·대상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⑱	기준인건비 초과지출허용항목 확대 운영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조충래 (전화 : 044-205-3312)	검토결과	수용, 신중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예산군)	협조부서(부처)	

□ 건의개요

- 폭우, 폭설, 산불 등의 재해재난 복구를 위해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초과지출허용항목으로 인정
-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시행 유예

□ 검토의견

- 재해재난 복구 등을 위해 지급된 인건비 초과지출허용항목으로 인정 : 수용
 - 산불·대형사고 등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인건비 초과지출을 허용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초과지출 허용을 확대*할 예정
 -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10.1.)
-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 페널티 시행 유예 : 신중검토
 - 페널티 제도는 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준수 및 지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특정 상황으로 인한 페널티 시행 유예는 신중 검토 필요
 - 다만, 예상치 못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초과지출 허용을 확대하는 등 페널티 부담 완화 및 합리적인 페널티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⑰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체사업(해상풍력) 지원		
검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 이재호 사무관 (전화 : 044-203-5151)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8.)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태안군)	협조부서(부처)	

□ 건의개요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 '25년부터 폐지 수순
- '37년까지 태안화력 10기 중 8기 폐지 계획, 대체 발전소 건설^{타지역 6기, 미정 2기}

구분	#1	#2	#3	#4	#5·6	#7·8	#9	#10
용량(MW)	500	500	500	500	1,000	1,000	1,050	1,050
폐지시기	'25년	'26년	'28년	'29년	'32년	'37년	'46년	'47년
대체건설	구미	공주	여수	아산	용인	미정	-	-

- 대체산업 등 대안없이 폐지 시 세수·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가속화 예상
⇒ 대체사업(해상풍력), 폐지부지 활용한 무탄소(수소 등) 발전소 대체 건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에 전력 계통 특례 등 명문화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지역영향 최소화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폐·유휴부지 및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

Ⅱ. 시·군 건의사항

1.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지역 대표행사 관련시책 지원(보령) ... 35
2.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재검토 건의(공주) 37
3.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범위 확대 건의(아산) 39
4.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원 건의(서산) 41
5. 도로 긴급 통행제한 시 도로관리자 신호 또는 지시 권한 부여(논산) ... 43
6. 육·해·공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계룡) 45
7. 경로당 주5일 급식 정책 국비 지원 건의(당진) 46
8. 원활한 마을 이장 선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금산) 47
9.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사업 예산증액 요청(금산) ... 48
10.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건의(부여) 49
11.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요청(서천) 52
12. 시설 블루베리 및 쪽파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건의(서천) ... 53
13. 농촌 빈집정보 수집·위탁관리·표준계약 제도 정비(청양) 54
14. 농업진흥지역(구역) 내 농촌생활 거점시설 설치 규제 완화(청양) ... 56
1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국·도비 지원 건의(예산) 58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지역 대표행사 관련시책 지원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보령시)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지원분야 확대를 건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 황

- (한정된 지원 대상) 특별교부세^(시책수요)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에 한정하여 교부되고 있어, 문화·예술·관광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지역축제에는 지원이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
- 지자체별 특수한 여건과 재정수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특별교부세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콘텐츠 육성 등 지역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 1. 전국체전, 소년·장애인 체전 2. 국가 유치 국제 체육대회 3. 그 밖의 국가적 주요 행사 등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 (지속되는 인구감소)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감소가 구조화됨에 따라 지역 소멸 위험이 점차 확대, 소멸위기지역 제도약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활력 도모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추진 중 ※ 보령시: 인구감소지역

* 243개 지자체 중 107곳 지정[인구감소 지역(89), 인구감소 관심지역(18)]

-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속되는 인구감소에 대응, 정주 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 인구를 중시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본격 도입하고 지역 활성화의 핵심 지표로 관리 중



□ 문제점

- (지자체 재정 부담 심화) 지역 대표축제는 ‘생활인구 증대’와 ‘지방소멸 대응’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크나, 국가적 행사에 비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 근거가 미흡하여 단년도 공모사업 또는 불안정한 자원에 의존

→ 대표축제는 단년도 행사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열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보령 대표축제: 보령 머드축제(제28회), 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제17회)

□ 건의사항: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지역행사 관련 시책 지원

- 지역 축제 집중 육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지원분야 신설 건의
 - 국가가 인정하는 대표 지역축제*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사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역량 마련

*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등 ** (시도) 300억원 이상, (시군구) 200억원 이상

※ 특별교부세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 개선사항 반영사례('25.9.)

→ 사업 교부대상 대폭 확대, 중복교부 제한 폐지 등

작성기관

소 속 : 보령시(대외협력과)

성명: 윤지영 ☎041)930-2600

②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재검토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주시)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33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전력 수요 총당 과정에서 비수도권 부담 집중과 환경·세계유산 훼손, 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 재검토를 건의함

□ 현 황

- (정책동향)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규모) 전국적으로 3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중
- (추진단계) 송전선로 경과지(노선) 선정 절차 추진 중

충남권 주요사업

- ① 신계룡-북천안 (대상 : 공주, 천안, 논산, 계룡 / 1단계 입지선정 완료)
- ② 새만금-신서산 (대상 : 보령, 서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예산 / 1단계 입지선정 완료)
- ③ 군산-북천안 / ④ 새만금-청양 / ⑤ 청양-고덕(사업 준비단계)

□ 문제점

- 정책·제도적 한계
 - 현행 전력수급 체계는 수도권 전력 수요 총당을 위해 비수도권에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 보장이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
- 세계유산 인근 역사·문화자산 훼손 및 관광·지역경제 영향 우려
 - 송전선로 건설로 세계유산(백제역사지구, 마곡사) 인근의 역사·문화 자산 보존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 매력도 저하와 방문객 감소 등 지역 경제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 주민 생활권 및 권익 침해 우려

-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 영향에 대한 불안이 지속 제기되고, 토지 이용 제한 · 재산가치 하락 등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갈등 장기화에 따른 지역 공동체 분열 우려

□ 건의사항

○ 송전선로 건설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 수도권 중심 전력 수급 구조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지역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정책 보완 필요

○ 지산지소(地產地消)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

- 전력 생산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분산형 전력체계를 확산하여 장거리 송전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 완화

○ 전력 다소비형 첨단산업의 합리적 지방 분산 유도

- 전력 수요가 집중된 첨단산업단지의 입지 분산을 통해 수도권 전력 수급 부담의 구조적 완화 도모

작성기관

소 속 : 공주시(경제과)

성명 : 백종현 ☎ 041)840-8301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③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범위 확대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추진기간	상시	소요예산	-		

◆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 금액별 계약 방법 중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범위 확대 건의

□ **현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가목 ⇒ 공사 금액별 계약 방법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건설공사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전기, 통신 등)	입찰참여 지역제한	비 고
일반경쟁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전국	
제한경쟁	10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광역(시도)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4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1.6억 원 이하	기초(시군)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	

- 상기 공사 금액별 계약 방법 중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은 시군 발주공사의 입찰 참여 범위를 해당 시군으로 지역 제한 가능
- **종합공사는 4억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이하, 기타공사는 1억 6천 이하까지의 ○○시 발주공사는 ○○시 소재 업체로 입찰 참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건의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범위 확대
-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건의
 - [현행] 건설공사 4억 이하, 전문공사 2억 이하, 기타공사 1억 6천 이하
 - [개정] 건설공사 5억 이하, 전문공사 3억 이하, 기타공사 2억 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5호가목 개정 >

현 행			개선 건의(안)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건설공사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전기, 통신 등)	건설공사 (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전기, 통신 등)
4억 이하	2억 이하	1.6억 이하	5억 이하	3억 이하	2억 이하

□ 기대효과

-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중앙정부 예산 편성 불요)만으로 지역 경제 양대 축인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이 공통 시행 할 수 적정한 방안

지역 경제의 양대 축	
자영업, 소상공업	건설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화폐 발행과 가맹점 확보, 할인을 지원 추진 중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을 통해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면
↓↓ ↓↓ ↓↓ ↓↓ ↓↓	
지역화폐와 잉여 가계소득이 결합해 지역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효과 기대	공사 시행에 따른 지역 자재 구입, 건설기계 사용, 인건비, 하도급 연계 등 지역 뉴딜 효과 기대

- 시군에 규모 있는 일거리(공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해당 시군 근로자 채용, 자재 사용과 기계 임차, 근로자 식대 등 연쇄적인 소비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작성기관 소 속 : 아산시(회계과) 성명 : 김보규 ☎ 041)540-2401

④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원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산시)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추진기간	2021.~2026.	소요예산	189억원 (도비 16.5, 시비 172.5)		

◆ 출퇴근 차량으로 상습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대산지역의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함.

□ **현황 및 필요성**

- 대산 임해산업지역 성장에 따른 국도 29호·38호선 상습 정체 발생
- 대산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교통 정체 심화 예상
- 서산시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응하여 조속한 인프라 보강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1.~2026.
-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오지리 ※ 국도 38호선과 시도 12호선 연결
- 연 장 : 2.63km(폭원 15.0m, 3차로 및 농로)
- 사 업 비 : 189억원(道 16.5억, 市 172.5억)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2024. 9. : 공사 착수
 - 2025. 9. : 토지보상 완료
 - 2026. 11. : 공사 준공 예정

□ **건의사항**

- 대산지역 상습 교통 정체 해소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사비 중 도비 25억원 지원 건의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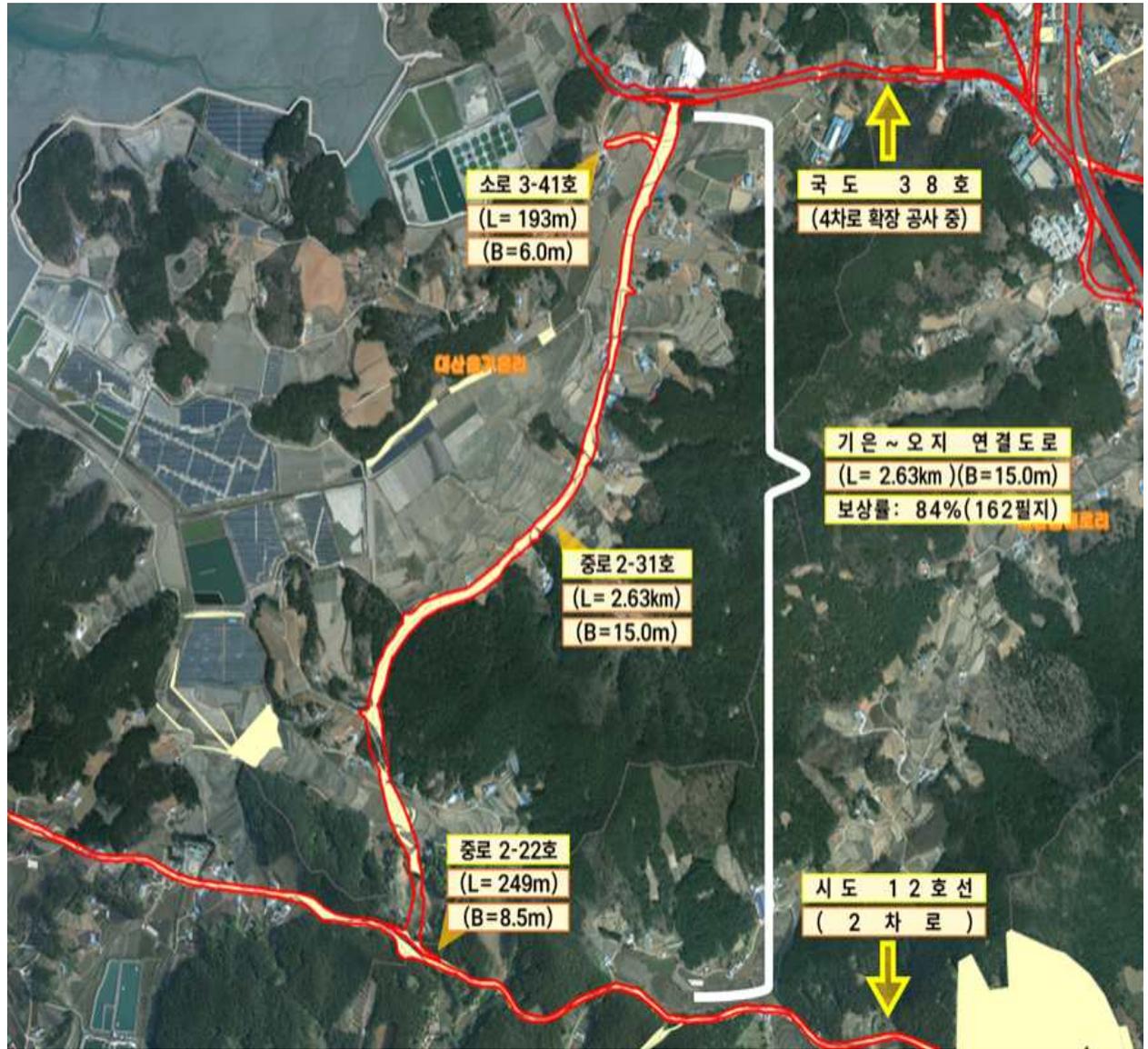
구 분	계	기투자	2025년	2026년
총계	18,900	8,550	4,500	5,850
시비	14,750	7,900	3,500	3,350
도비	4,150	650	1,000	2,500

□ 참고자료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1. 사업 현황

기 간	금 액	위 치	사업규모	비 고
2021.~2026.	189억	대산읍 기은리~오지리	도로개설 2.63km	

2. 사업 계획도



작성기관

소 속 : 서산시(도로과)

성 명 : 조용석 ☎041)660-2484

⑤	도로 긴급 통행제한 시 도로관리자 신호 또는 지시 권한 부여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경찰청 (교통안전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대형교통사고 등 긴급 통행제한 시에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신호 또는 지시를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현황

-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 관리자는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음
(도로법 제76조제6항, 도로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 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 이용자에게 신호 또는 지시를 통해 통행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찰보조자로 한정되어 있음 (도로교통법 제5조, 제6조)
 - ☞ 도로관리자는 긴급통행제한 결정 권한은 보유하나, 현장에서 직접 신호·지시를 통한 통제권한은 부재

□ 문제점

- 재난·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통제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즉시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로 인해 도로관리청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통행제한·차량 유도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행 법령상 명시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임

- 긴급성과 불가피성으로 인해 사실상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적 정합성 및 현장 대응의 안정성이 부족

□ **건의사항**

- 재난·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응의 불가피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제한 시 통행 유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로관리청을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경찰 지휘·통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통제의 실효성 확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4. <신 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사고 또는 재해 예방 및 수습을 위해 긴급 통행제한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 시 유도하는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

⑥	육·해·공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국방 중추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선진국형 군사·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 건의

□ 건의배경

- 계룡시는 3군본부가 위치한 국방 중추도시로, 국방기능 지원을 위해 2003.9.19.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법률」에 따라 출범한 도시
 - 면적은 충남의 0.7%(60.72km²)로 협소하고, 이 중 46%(27.9km²)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개발 여건이 제한됨
 - 軍 핵심기관 밀집으로 북핵·안보 위협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등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함

□ 특별법 제정(안) 개요

- (법 률 명) 육·해·공군 등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 (제정목적)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방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계룡시의 균형적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 국방부 소유부지 사용에 관한 특례 및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문화·복지·생활 SOC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지원 등
- ※ 유사 특별법 사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등

□ 건의사항

- 국방중추 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 드림

작성기관

소 속 : 계룡시(전략기획감사실)

성명: 박은별 ☎042)840-2053

⑦	경로당 주5일 급식 정책, 국비 지원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당진시)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추진기간	2026년	소요예산	-		

◆ 경로당 주5일 급식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식비·시설·인력 지원을 국비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

□ 현 황

- 정부에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5일 급식 제공을 확대하는 정책추진 발표('24.4.30)
- 노인복지법 개정('24.12.2.)으로 부식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국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26년 당진시 경로당 운영현황(359개소)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계	5,782,433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953,497	국50%, 도15%, 시35%
부식비 지원 (경로당별 월 10만원)	430,800	도30%, 시70%
운영비 지원	838,936	시100%
해나루쌀 지원	93,600	시100%
경로당 도우미 등	3,465,600	노인일자리로 대체

□ 문제점

- 현재 국비 지원은 양곡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반찬 재료비 등 부식비와 조리환경 개선 비용은 지방비 부담에 의존
- 부식비가 지방비로 전가되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급식의 질과 제공 수준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의사항

- 정부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로당 주5일 급식이 지방재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부식비를 포함한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

작성기관

소 속 : 당진시(경로장애인과)

성명: 이동규 ☎041)350-3342

⑧	원활한 마을 이장 선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비예산		

◆ 이장 선출 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자격요건 중 최소한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현황

- 「지방자치법」상 이·통장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근거 부재
- 충남 15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이·통장 결격사유를 명시
-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이장 결격사유 신설 검토 중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문제점

- 도농 교류 활성화에 따른 주민 간 갈등 발생
 - 이장 선출 시 마을 원주민과 이주민 간 의견 대립 심화
 - 이장 자격 및 선출 방식에 대한 분쟁 증가
 - 이장 자격요건 중 최소한의 범죄 경력 확인 등의 필요성 대두

□ 건의사항

-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 명시
 - 현행법상, 범죄 경력은 본인에 한하여 조회는 가능하지만 서류 발급은 불가하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
 - 이·통장(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작성기관

소 속 : 금산군(자치행정과)

성 명: 박지현 ☎ 041)750-2764

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사업 예산증액 요청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추진기간	2026. 1. ~ 12.	소요예산	269백만원 (도비)		

◆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에 실제 신청이 36% 증가하였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 민원 지속 발생.

□ **현황**

- 충청남도과 금산군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국비 지원 외에 道 추가지원을 함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
- ‘26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지침 개정에 따라 상·하지 마비(항목 3),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항목 7)가 지원대상으로 포함.
※ 금산군 이용자 '25년 80명 대비 '26년 109명으로 **36% 증가**

□ **문제점**

- 도 추가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지만, 관련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신청 수요 반영이 어려움.
※ 대상자의 신청 지원시간 4,145시간 (8.6억원) , 실제 반영시간 2,880시간 (5.6억원)
- 예산 부족으로 시간이 감액된 道 추가지원 사업 이용자 민원 지속 발생

□ **건의사항**

- ‘26년 선정기준 개편으로 인한 실질 수요 반영하기 위한 예산 증액 요청.
- 현재 예산액 590백만원에서 ⇒ 859백만원으로 증액 요청 (도 3: 군 7)

작성기관

소 속 : 금산군(가족정책과)

성 명: 곽명성 ☎ 041)750-4123

⑩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전세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RE100 달성을 위한 범국가적 **재생에너지 전환과 쌀공급 과잉에 따른 재배면적 축소**를 위한 조항 신설·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중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지 입지는 현실적으로 불가
- 농촌지역의 경우 입지여건이 양호한 상당부분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경지정리 지역)으로 현재 「농지법」상 발전시설 입지 불가

□ 필요성

- RE100 달성을 위한 범국가적 재생에너지 전환
 -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될 RE100 달성을 위해 실효성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조속한 발굴 필요
- 농촌지역 고령화
 -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로 농업인의 경작 능력 저하와 소규모 경작 농가의 경우 상대적 소득불균형 초래
- 쌀공급 과잉에 따른 재배면적 축소
 - 쌀공급 과잉으로 경지정리 지역 내 벼재배 면적 조정이 단계적 진행 예정으로 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 개선방안

-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및 규제완화
 -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시설(태양광)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안정적 소득원 개발과 농촌지역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

- 농촌지역의 경우 전체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경지정리구역)으로 발전시설은 「농지법」상 입지할 수 없는 시설로 소규모 발전시설에 한하여 규제완화 필요
- 농업진흥구역(경지정리구역)내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1가구당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하여 완화
- 필요면적 약500㎡ 정도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쌀공급 과잉에 따른 재배면적 축소 기조에 부합하고, 발전시설 수익에 따른 농가소득 기대

□ 건의사항

- 농업진흥구역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하여 입지가능토록 「농지법」 개정
 - 「농지법」 제22조 농지의 최소분할면적 완화(2천㎡ ➡ 1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 신설

작성기관

소 속 : 부여군(도시건축과)

성 명: 김영일 ☎ 041)830-2380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 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시행 7.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 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식물 공장의 설치 	<p>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요청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천군)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추진기간	2026~	소요예산	-		

- ◆ 고향사랑기부제에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함

□ 고향사랑 기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는 주소지 기부 가능

□ 문제점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구 감소지역은 구조적 여건상 제도 효과가 제한적
- 지역 소멸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는 해당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 참여 불가
 - 인구감소지역은 출향 인구가 적어 기부자 풀 자체가 협소하여, 대도시·수도권 대비 성과 창출 한계 및 양극화 발생

□ 건의사항

-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 요청
-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 限

작성기관

소 속: 서천군(자치행정과)

성명: 박동준 ☎041)950-4038

⑫	시설 블루베리 및 쪽파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천군)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충남도청 (스마트농업과)
추진기간	2026~	소요예산	5억 원		

◆ 서천군 주요 원예작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
(블루베리(시설) 신규품목 지정 및 쪽파(실파) 사업지역 추가)

□ **일반현황**

- (배 경)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강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서천군 주요 원예작물 중 일부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재해 발생 시 농가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위 치) 서천군 일원

□ **품목별 현황 및 건의사항**

① 블루베리(시설) -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품목 지정 건의

- (재배현황)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 블루베리 주산지
(재배농가 51호→60호, 재배면적 28.9ha→38ha, ‘23~’ 25)

○ (피해현황)

- ‘24. 6. 호우·강풍으로 수확기 낙과 및 침수피해 발생(피해액 9.1억 원)
- ’ 25. 7. 집중호우로 낙과·침수 피해 발생(피해액 1.04억 원)

※ 시설 블루베리는 농작물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으로 피해 신고 및 공식 집계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시설 블루베리를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② 쪽파(실파) -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지역 추가 지정 건의

- (재배현황) 재배농가 668호, 재배면적 240ha(‘25), 연 2기작
- 피해현황(서서천농협 자체 조사 결과 2025년 약 15억 원 수익 감소)
 - ‘24. 7. 호우·강풍 침수 피해 / - ‘25. 7. 집중호우 침수 피해
- (건의사항) 쪽파(실파)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지역에 서천군을 추가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작성기관

소 속: 서천군(농업정책과)

성명: 김광수 ☎041)950-4106

⑬	시·군 빈집정보센터(가칭) 설치·운영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청양군)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빈집정보를 시·군이 총괄 관리하면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매매·임대·임시거주 매칭까지 연계하는 전담기관 구축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 사유재산·개인정보 제약 등으로 빈집 현황 파악·연락·중개에 한계
- 수요자: 단기 체험거주를 희망하나 정보 부재로 정착 전 단계에서 포기
- 일부 지자체의 민간(공인중개사 등) 협력 운영은 있으나 표준 절차·책임·재원이 미비해 확산이 어려운 문제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시·군 빈집정보센터 설치(전담인력/상담/매칭) 및 통합 DB운영
- 소유자 동의 기반 거래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준 동의서/안내문, 개인 정보 처리 기준, 공개 범위 등 운영 법령(지침) 마련
- 도-시군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관리기관 제도화 및 운영비 지원
 - ※ 사군 예산만으로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적극적 국도비 지원 필요
- 국가 ‘빈집애(愛)’ 거래지원 서비스와 연계방안 강구
 - ※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있으나 매물이 적어 활용이 안되는 문제 해결

□ 구체적 추진계획(안)

- 체험거주형 빈집 “찾고-점검하고-계약하고-관리하는” 표준체계 구축
 - (중앙부처) 전국 표준(데이터, 동의서, 보안 등) 법령 마련, 국비 확보
 - (도) 광역 단위 성과관리, 공동운영협약(도 - 시·군) 설계, 도비 확보
 - (시·군) 빈집 정비·활용에 대한 행정권한 및 예산 집행
 - (센터) 빈집정보 통합 구축·현행화 및 소유자 동의 확보·매물화·상담매칭 전담

작성기관

소 속 : 청양군(도시건축과)

성명: 윤기송 ☎041)940-2821

⑭	농업진흥지역(구역) 내 농촌생활 거점시설 설치 규제 완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청양군)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 농촌은 농지를 중심으로 마을 생활권 거점이 형성되는 구조가 많음에도, 농업진흥지역(특히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법령상 예외로 허용되는 시설 외에 생활SOC·필수서비스 시설 설치가 곤란한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정주여건 저하: 보건·돌봄·복지·문화·체육 등 주민 필수시설이 마을 내·인접부에 설치되지 못해 생활권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
- 비효율적 입지 유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시설이 마을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대체부지 확보·인허가 절차로 사업기간과 비용이 증가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허용시설 범위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예외 허용시설에 농촌 필수 생활시설(생활SOC)을 명시적으로 추가
 - ※ 보건·돌봄·복지, 작은도서관·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재난대피·복합쉼터 등
- 농지보전형 입지기준 표준화: 무제한 완화가 아니라, 마을 연접(취락지 인접)·소규모 면적 상한·대체입지 검토·농업기반 영향 최소화 등 기준을 마련해 농지보전과 정주개선을 병행
- 절차 합리화(신속 처리체계): 농촌공간계획·농촌특화지구 등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필수시설은 신속협의/간소화(패스트트랙)를 도입하여 처리

⑮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국·도비 지원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보건복지부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당초 재량설치에서 시군 의무설치로 개정,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대해 건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24. 1. 개정 / '25. 1. 시행)
(변경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변경후)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 사회복지협의회 개요

- (기능)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개발, 사회복지사업의 협의·조정, 국민 참여 촉진 등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
- (조직)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로 구성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현 황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소외계층 발굴·지원 등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보조금은 각 시·군·구별 자체 기준에 의해 각각 달리 지원되고 있음.

□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존 재량설치에서 의무설치로 변경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국도비 지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 각 지자체별 운영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 및 예산부담 가중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국도비 지원건의

작성기관

소 속 : 예산군(주민복지과)

성명: 유지선 ☎041)330-7441

Ⅲ. 협의회 심의·논의사항

심의 1.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61
심의 2. 민선8기 4차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7
논의 1. 민선8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백서 발간 추진사항	68
논의 2. 차기 회의 개최 안내	70

III 협의회 심의·논의사항

심의 1.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일부개정(안)

□ 개정 주요 내용

- 제10조(회의)
 - 개정 필요성: 최초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회 개최 요건 추가
- 제11조(의결)
 - 개정 필요성: 민선9기 출범 직후 혼란 예상에 따른 의결정족수 완화
- 제12조(사무국)
 - 개정 필요성: 사무국 파견인원 복귀로 인한 사무국 행정공백 최소화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회의) 2. 임시회의는 <u>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u> 개최한다.	제10조(회의) 2. 임시회의는 <u>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협의회 최초 구성 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u> 개최한다.
제11조(의결) <신 설>	제11조(의결) ④ <u>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또는 회장 궐위 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u>
제12조(사무국) <신 설>	제12조(사무국) ② <u>차기 사무국이 구성되기 전까지의 임시회 개최, 의제 설정 등 긴급한 행정 사무는 전임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대행한다.</u>

□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안)

(제정) 1998. 8. 22.
(일부개정) 2019. 5. 27.
(일부개정) 2019. 9. 30.
(일부개정) 2020. 7. 13.
(일부개정) 2021. 9. 7.
(일부개정) 2023. 4. 26.
(일부개정) 2025. 3. 11.
(일부개정) 2026. 2.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의회는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의회는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협의회 최초 구성 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① 협의회는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시장·군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또는 회장 궐위 시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⑤ 차기 사무국이 구성되기 전까지의 임시회 개최, 의제 설정 등 긴급한 행정사무는 전임회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대행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 ②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 제20조(상징물) ①협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상징물은 ‘통합브랜드’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부 칙 (1998. 8. 22.)

-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0.)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7.)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6.)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1.)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예산 변경내용

- 국제화여비(202.04)추진 잔액(12,400천원)을 사무관리비(201.01)로 추가 편성하여 민선8기 백서 발간 및 사무국 업무추진에 사용하고자 함.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단위:천원)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계	232,201	232,201	0
지방자치발전	41,200	41,200	0
지방자치분권추진	41,200	41,200	0
자치분권 활성화	41,200	41,200	0
201 일반운영비	29,200	29,200	0
203 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행정운영경비	191,001	191,001	0
인력운영비	87,166	87,166	0
인력운영비	87,166	87,166	0
101 인건비	87,166	87,166	0
기본경비	103,835	107,657	0
기본경비	103,835	107,657	0
201 일반운영비	33,100	45,500	12,400
01 사무관리비	31,600	44,000	12,400
◎ 일반수용비(사무용품 등 사무실 운영)	8,400	10,800	2,400
◎ 급량비 8,000원*3명*50일	1,200	1,200	0
◎ 민선8기 백서 제작	22,000	32,000	10,000
02 공공운영비	1,500	1,500	0
202 여비	30,400	18,000	△12,400
01 국내여비	5,400	5,400	0
◎ 협의회 업무추진 150,000원*3명*12월	5,400	5,400	0
04 국제화여비	25,000	12,600	△12,400
◎ 우수건의공무원 국외연수	25,000	12,600	△12,400
203 업무추진비	4,800	4,800	0
303 포상금	4,500	4,500	0
800 예비비및기타	31,035	31,035	0

- ◎ 민선8기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주요 발자취를 정리·기록하여 교류·협력과 공동 노력을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백서개요

- 발간근거: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4조
- 수록범위: 민선8기(2022. 7. ~ 2026. 6.)
- 추진기간: 2025. 9. ~ 2026. 6
- 발간형태: 책자 400부, 디지털 자료(e-book, USB=10개)
- 분량: 300페이지 이내/ (규격) B5(182×257mm)
- 소요예산: 22,000천 원
- 주요내용: 협의회 연대활동과 시군 우수정책사례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분석

□ 그간 추진사항

- 협의회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사자료로 활용가능토록 제작함으로써 추후 민선9기 등 차기 협의회 길잡이로 방향 수립
- 2025. 9. 민선8기 협의회 백서발간 기본계획 수립
- 2025. 10. ~ 2026. 2. 백서발간 기초 자료 작성 및 초안 작성 완료
 - 발간사 및 시장·군수 인사말씀 각 시·군 취합 완료
 - 협의회 사무국 주요 추진사업 및 공동대응 사례 정리 수록
 - 시·군 우수정책사례 취합 완료에 따른 분류 수록
 - 민선8기 동안의 정책건의 성과분석 및 우수건의에 대한 종합분석
 - 민선8기 건의사항 총괄표 작성을 통한 통계자료 작성
 - 민선9기 협의회를 위한 과제 및 정책제언 등 협의회 운영방안 수록
 - 회의 개최결과, 역대 임원, 협의회 회칙 등 백서 부록자료 완료
- 2026. 2. 11. 협의회 백서 편집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1. 편집위원회 구성(안)

○ 구성기간: 2026. 1. ~ 협의회 백서 발간 시까지

○ 위원회 구성: 6명

- 편집위원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

- 위 원: 5명(*임원 시·군 담당과장)

* 회장: 보령시 / 부회장: 서산시, 청양군 / 사무총장: 예산군 / 감사: 금산군

○ 위원회 활동사항

- 협의회백서에 수록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백서에 수록할 자료의 수집, 검토 및 내용의 작성

- 그 밖에 백서에 필요한 사항 검토 및 심의

2. 행정사항

○ 민선8기 협의회 백서 추진사항 보고: 2026. 2. 25.

○ 민선8기 협의회 백서 편집위원회 명단 제출: 2026. 2. 27.(해당 시·군)

○ 협의회 백서 초안 원고작성 완료 : 2026. 3. 2. 한

- 3월 중 1차 협의회 백서 편집위원회 서면심의

○ 협의회 백서 디자인 및 제작 용역 발주: 2026. 3. 6. 한

○ 협의회 백서 디자인 계획 및 수정기간: 2026. 3. ~ 2026. 5.

- 2차 협의회 백서 편집위원회 내용 및 디자인 서면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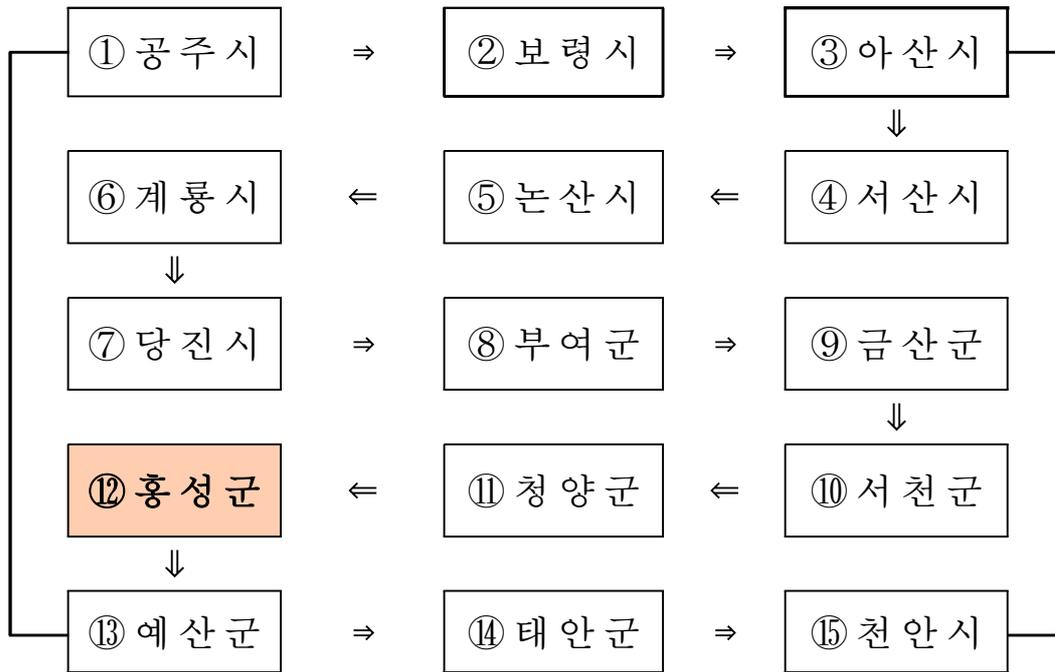
○ 최종안 확정: 2026. 5. 8. 한 / 발간 및 배포: 2026. 6. 3. 이후

- 배포대상: 300여 개소(전국 지자체, 대한민국 및 시·도협의회 등)

□ 개요

- 개최시기 : 2026. 6월 중
- 개최장소 : 홍성군

<시·군 직제순서에 의거 개최>



* 전국동시지방선거(6. 3.)로 인해 당초 2월, 4월, 6월(3회) → 변경 2월, 6월(2회)
 민선9기 출범 후 임원선출을 위해 7월 임시회 개최 예정으로 장소는 추후 공지

참고

1.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1. 24.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2. 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2. 20.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5.까지	목	각급선거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 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4.(월))
3. 5.부터 6. 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 22.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 4.부터 6. 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 12.부터 5. 1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5. 14.부터 5. 1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 2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 2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5. 21.부터 6. 2.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5. 22.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첨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5. 22.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5. 24.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 29.부터 5. 30.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6. 3.	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6. 1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8. 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6. 2. 3. ~ 6. 3.(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37②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의 금지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6. 2. 3. ~ 6. 3.(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허용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37②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IV. 홍보·협조사항

1. 2026년 공주인절미 축제 확대 변경 개최(공주) 75
2. 2026 논산딸기축제 개최(논산) 76
3. 제36회 한산모시문화제 개최(서천) 77
4.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청양) 78
5. 새로운 문화·관광의 거점 '면암 최익현 기념관'(청양) 79
6. 2026 태안국제월예치유박람회 개최(태안) 81
7. 태안해양치유센터 정식 개관에 따른 운영 안내(태안) 82

- ◆ 산성시장상권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인절미축제를 지역 대표 관광브랜드 및 공주시 대표 봄축제로 거듭나고자 함

□ 2026년도 주요 변화 내용

- ① 지역 단체별로 분산 진행됐던 인절미 관련 행사를 통합·확대 개편
- ② 주요 공간 확대 : (기존) 산성시장문화공원 → (변경) 백미고을길~산성시장
- ③ 인절미축제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 기획 및 운영 전문성 강화
- ④ 공주 인절미의 역사적 상징성과 유래담이 결합된 스토리텔링 강화

□ 축제개요

- 행사기간 : '26. 3. 28.(토) ~ 3. 29.(일) 11:00 ~ 18:00 / 2일간
- 장 소 : 왕도심 일원(산성시장~백미고을길), 우성면 목천2리
- 주최·주관 : 공주시 / 공주활력지원센터(상권활력팀)
- 주요내용 : 개·폐막식, 대형인절미메치기, 각종 체험 및 공연 등 운영

【인절미 모티브 테마 거리 운영】

- ① (인)의 길 : C구역(산성시장)
 - 현대적 이미지를 구현한 무대프로그램, 팝업존 구성 등
- ② (절)의 길 : B구역(미나리길)
 - 근대화 이미지를 구현한 인력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존 구성
- ③ (미)의 길 : A구역(백미고을길)
 - 조선시대 이미지 구현한 포토존 등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향후, 충남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내 각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 및 방문 요청

2

2026 논산딸기축제 개최

【 논산시 】

- ◆ 논산의 대표 특산물 딸기와 새로운 산업전략인 국방산업을 활용한 2026년 논산딸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2027 논산세계딸기엑스포 개최 기반과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기틀 마련

□ 행사개요

- 축 제 명 : 2026 논산딸기축제
- 부 제 : “논산딸기, 세계를 유혹하다”
- 기 간 : 2026. 3. 26.(목) ~ 29.(일) ▶ 4일간
- 장 소 : 논산시민가족공원 및 시민운동장 일원
- 주최/주관 : 논산시/논산문화관광재단
- 주요행사 : 논산딸기 거리퍼레이드, 청정딸기 수확체험, 딸기 디저트 카페, 헬기전시 및 탑승체험 등 10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협조사항

- 많은 도민들이 논산딸기축제에 방문할 수 있도록 참여 홍보 협조

3 제36회 한산모시문화제 개최

【 서천군 】

-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산모시짜기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도모

□ 축제개요

- 기 간: 2026. 6. 12.(금)~6. 14.(일) / 3일간
- 장 소: 한산면 한산모시관 일원
- 슬 로 건: 한산모시, 오래된 미래
- 주최/주관: 서천군/(재)서천문화관광재단 ·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 주요내용: 저산팔읍길쌈놀이, 모시패션쇼, 미니베틀체험, 한산모시학교 등

□ 주요내용

- (공연) 개 · 폐막식, 저산팔읍길쌈놀이, 주민모델패션쇼, 바람음악회 등
- (체험) 한산모시학교, 미니베틀짜기, 원데이 클래스, 모시옷 입기 체험 등
- (전시) 한산모시 주제 전시, 공간연출 및 야간조명
- (연계) 관광지 연계 투어, 스탬프 투어, 지역 특산물 · 먹거리 부스 운영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한산모시문화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과 홍보 협조

4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 청양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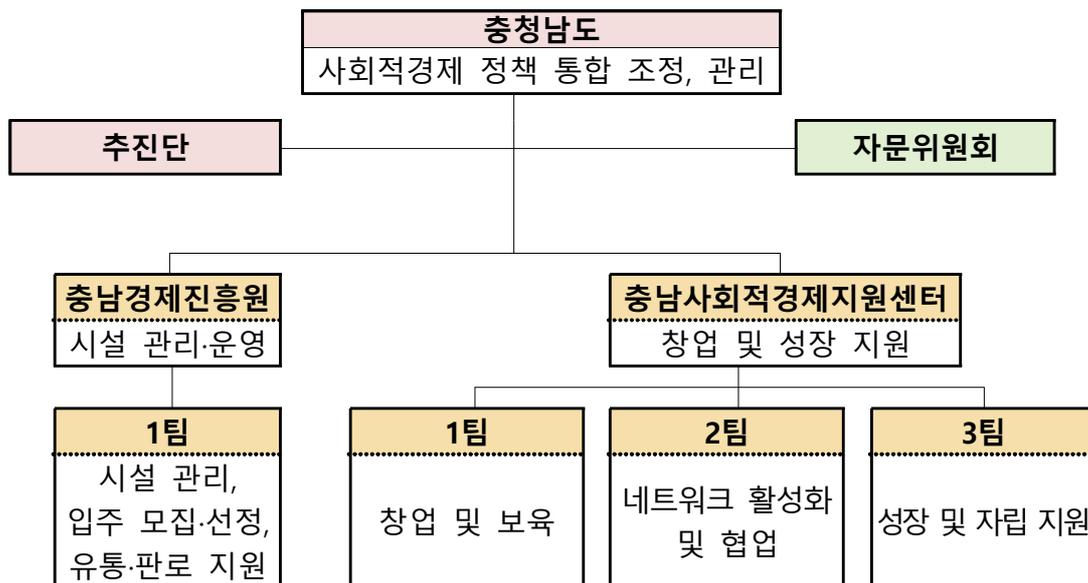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고도화와 생태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거점 공간 운영

□ 운영개요

- 근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 조성목적: 거점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지속 성장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조성기간: 2020. 7. ~ 2024. 12.(4년)
- 위치: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舊 청양여자정보고)
- 시설현황
 - 사업비: 28,780백만원 (국비 14,000, 도비 8,868, 군비 5,912)
 - 사업규모: 신축 1동(지하1~지상4), 연면적 7,333㎡, 부지 13,341㎡
 -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지원조직 네트워킹, 창업·보육 거점 구축

□ 운영현황

- 시설관리: 충남경제진흥원 위탁 / 3년 / 1팀
- 운영지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상영) / 15명
- 운영조직도



- ◆ 국내 최초 면암 최익현 선생을 주제로 조성된 전문 역사문화공간으로 기존 모덕사를 역사문화 교육·체험·관광 공간으로 재탄생

□ 개요·현황

- 위 치: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1번지 일원(모덕사, 나분동길12)
 - 시 설: 모덕사, 면암고택, 영당, 전시실(면암관), 교육체험관(별별곳, 존심루), 연못(명리지), 수장고(대의관), 숙박시설(고요헌) 등
- ※ 준공식 2025. 12. 12. / 시범운영 2026. 2. 1.부터 (정식 개관 4월 예정)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면암관(전시실) 운영

-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 오후 5시 / 매주 월요일 휴관
- 운영방법: 전시 관람을 연계한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 랐 료: 무료 (단, 체험료 및 재료비 실비)

○ 고요헌(숙박시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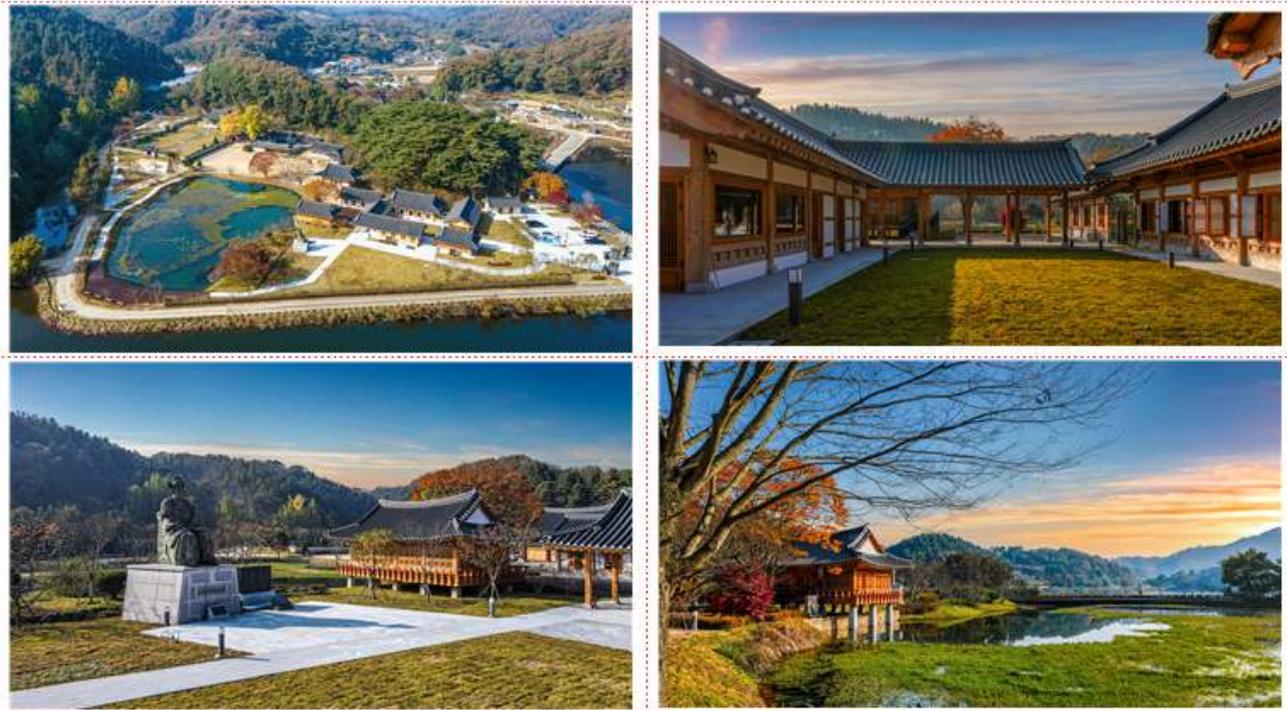
- 운영규모: 8동 (5인실, 약 18평)
- 이용시간: 입실 오후 3시부터 ~ 퇴실 오전 11시까지
- 이 용 료

기 준		이용료	비 고
5인실/1박	주중	70,000원	※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 미만은 5천 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 지급 ※ 주말 : 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
	주말	100,000원	

○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동반 가족, 학교단체, 성인, 숙박객 대상 운영
- 지역 학교 및 청양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진



- ◆ 박람회장 주요 진입도로 환경 정비를 통해 국제행사 품격 제고
 - 쾌적한 지역 이미지 제공으로 방문객들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

□ 박람회 개요

- 때 · 곳 : 2026. 4. 25. ~ 5. 24. /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일원
- 주최/주관 : 충청남도, 태안군 / (재)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 참여규모 : 182만명 (내국 172, 외국 10), 40개국, 120개 기업
- ➔ 일 평균 6만명, 주말(휴일) 9만명 방문, 약 5천억원의 지역경제 효과 유발

□ 협조사항

- 박람회 연접 시군(보령, 서산, 홍성)에서 주요 진입도로 환경정비 추진
 - 홍성 IC ~ 서산AB지구(천수만로) 및 보령 IC ~ 원산안면대교(원산대로)
 - 잡목제거, 수목전정, 봄꽃식재, 도로정비, 쓰레기수거, 표지판정비 등
- ※ 태안군에서 수용 초과되는 방문객들이 연접 시군으로 방문 예상
- 각 시군 공무원 및 관할 지역 주민들의 박람회 입장권 구매 및 관람 독려
 - 일반 9,000원, 청소년 7,000, 어린이 5,000, 도 조직위 및 태안군 문의(40% 할인)

[박람회장 진입도로 환경정비 협조 구간]



7

태안해양치유센터 정식 개관에 따른 운영 안내

【 태안군 】

◆ 태안해양치유센터의 정식 운영을 알리고,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6. 1. 12.(월) ~
- 운영시간 : 매일 10:00 ~ 19:00 / 치유룸 입실(15:00), 퇴실(익일 11:00)
 - ※ 휴관일 :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신정, 근로자의날
- 운영내용
 - ┌ 기본프로그램 : 1층 실내 프로그램 + 옥상 수치유시설 이용
 - └ 전문프로그램 : 기본프로그램 + 전문 스파테라피 프로그램
 - └ 스테이패키지 : 치유룸 + 기본프로그램 + 전문프로그램
- 예약방법 : 홈페이지 (chiu.taean.go.kr) 사전예약 원칙, 방문접수 병행
 - 방문접수 당일 입장은 예약 현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 할인안내

1. 일반(상시) 할인			
구분	할인율	적용 조건	비고
단체	20%	10인 이상(사전 예약 필수)	기본프로그램에 한함
스테이패키지	20%	힐링.릴렉스.웰니스스테이	
2. 프로모션형 할인 (※ 정책상 변동 가능성 있음)			
이벤트명	할인율	기간 / 조건	
기본 프로그램	2026년 원예치유 박람회 특별할인	20%	박람회 기간 중 입장권 소지자
	지역 즐기GO 할인	20%	지역 관광지·업소 이용 영수증 제출 ▶ 2만원 이상 영수증 1장당 1인 적용 ▶ 당일 발행 영수증에 한함
	협약 기관 우대 할인	20%	협약 체결 기관 대상(최대 4인)
	한정 시즌 프로모션	40%	겨울 비수기(12월~2월)
전문 프로그램 멀티 할인	10%	전문프로그램 2개 이상 구매 시(총 금액 기준) (웰니스프로그램은 제외)	

□ 프로그램 구성 및 요금 안내

구 분		정 상 가	할 인 가 (3~11월)
기본 프로그램		(대인) 40,000원	프로모션 할인 / 단체할인 (대인) 32,000원
		(소인) 28,000원	(소인) 22,400원
전문 프로그램	베이직	두피테라피	전문 2개 이상 구매시 39,600원
		온열캡슐	39,600원
	프리미엄	산소챔버	59,400원
		페이스테라피	59,400원
	시그니처	전신테라피 (페이스/바다)	89,100원
		딸라소캡슐	89,100원
스테이 패키지	힐링 스테이	치유룸 기본프로그램 워킹테라피 (일반/2인) 260,000원 (가족/4인) 500,000원 (고급/4인) 600,000원	상시 할인 (일반/2인) 208,000원 (가족/4인) 400,000원 (고급/4인) 480,000원
	릴렉스 스테이	치유룸 기본프로그램 전문프로그램 (1인당 베이직 택1 제공)	(일반/2인) 278,400원 (가족/4인) 470,400원 (고급/4인) 550,400원
	웰니스 스테이	치유룸 기본프로그램 전문프로그램 (1인당 프리미엄 택1 + 시그니처 택1 제공)	(일반/2인) 340,000원 (가족/4인) 532,000원 (고급/4인) 612,000원

- 전 이용객 래쉬가드 무료 대여 제공
- 치유룸 : 일반형(8평형) / 가족형(18평형) / 고급형(26평형)
- 치유룸 기준인원 초과시 인당 2만원 및 프로그램 이용료 별도부과
(단, 2인실 최대 3인, 4인실 최대 6인까지 허용)
- 패키지 이용시 조식비용은 미포함된 가격으로 조식 이용료 별도 부과

V. 참 고 자 료

1.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87

(제정) 1998. 8. 22.
 (일부개정) 2019. 5. 27.
 (일부개정) 2019. 9. 30.
 (일부개정) 2020. 7. 13.
 (일부개정) 2021. 9. 7.
 (일부개정) 2023. 4. 26.
 (일부개정) 2025. 3.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선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회의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회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익년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회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회를 대표하고 협회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회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회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① 협의회는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시장·군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는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 ②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상징물) ①협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상징물은 ‘통합브랜드’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부 칙 (1998. 8. 22.)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ChungCheongNamDo Association of Mayor